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5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현재 미혼모·부 대다수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여전히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여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려는 미혼모·부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안 제4조)
-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 라. 환수조치 (안 제7조)
- 마.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자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내 미혼모자가족의 실태조사
2. 미혼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자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
4. 미혼모자가족의 정서·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심리 치료 및 교육·정보 제공
5. 미혼모의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미혼모자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미혼모자가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